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27
----------	-------

발의연월일 : 2025. 12. 19.

발의자 : 김종민 · 박수현 · 정일영
최혁진 · 한창민 · 손 솔
김준형 · 안호영 · 윤종오
서왕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는 최초로 “동일한 도시, 동반개최” 관례를 정립하고, “동일시설 사용”, “선수촌 제공” 및 “성화봉송 운영” 등 수많은 최초 사례를 남겼으며, 서울 패럴림픽 대회는 “전 세계 패럴림픽 발전에 거대한 진보”라는 언급과 같이 현대 패럴림픽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위와 같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범위에서 제8회 서울패럴림픽은 제외되어 있어 제8회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 및 기능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는 한편, 대회 명칭을 기존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36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 중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서울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올림픽대회”를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념사업”을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 기념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올림픽대회”를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 패럴림픽대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u>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u> 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8. ----- --- <u>서울패럴림픽대회</u> ----- -----
9. ~ 12. (생 략) ② ~ ④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 제24회 <u>서울올림픽대회</u> 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 ---- <u>서울올림픽대회</u> 및 제8회 <u>서울패럴림픽대회</u> ----- ----- ----- ----- ----- ----- ----- -----.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u>기념사업</u> 2. ~ 7. (생 략)	1. ----- 및 제8회 <u>서울패럴림픽대회 기념사업</u> 2. ~ 7. (현행과 같음)

<p>② · ③ (생 략)</p> <p>④ 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u>서울올림픽대회</u>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 · 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u> ----- ----- ----- ----- ----- -----.</p>
---	---